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- 제20기 해외자문위원 재외동포참여 공모 안내

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

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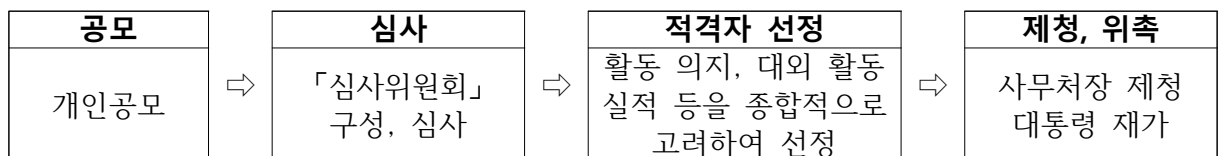
<설치근거 : 대한민국헌법 제92조>

“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”

-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(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)
- 자문건의 기능 수행을 위해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
-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

② 자문위원 위촉 절차 및 임기

- 위촉 절차



- 임기 : 2년, 무보수 명예직

※ 의장 명의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증 제공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발간 자료 정보 제공

③ 자문위원의 역할

- 해당 거주지역의 협의회에 소속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
기능과 역할 수행
- 법정회의 및 지역회의 · 협의회 주최 다양한 지역 평화통일활동 참여

II

제20기 자문위원 재외동포참여 공모 안내

① 위촉 기간 : 2년 (2021. 9. 1. ~ 2023. 8. 31.)

② 공모 인원 : 400명

③ 응모 자격 : 만18세 이상(2003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),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

※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관심이 있는 인사,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·협력,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,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등

<응모 제한 대상>

- 제19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(중도 사직자 포함)
-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'해촉'된 인사
-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(임기제 공무원, 국회의원 보좌관·비서관 등 포함)
- 단, 연구직공무원, 교육공무원(교수, 교사)은 위촉 가능

※ 재외동포참여 공모는 재외공관장 추천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재외공관장 추천은 해당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④ 공모 기간 : 2021. 5. 31. ~ 6. 18.

⑤ 지원방법

-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(www.nuac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및 신청서식 확인
- 재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(6종)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**6월 18일 24시(한국시간 기준)**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에 우편(EMS)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(스캔) 제출

※ 우편(EMS)은 6.18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늦게 도착할 시 이메일 도착 시간으로 같음.

【우편물(EMS) 보내실 곳】

(04605) **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**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

84, Jangchungdan-ro, Jung-gu, Seoul 04605, Korea

※ 공모제 서류접수 이메일 : 이정희 주무관 solmom@korea.kr

⑥ 제출서류 : 6종 [별첨]

-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
- ② 신원진술서
- ③ 여권 사본
- ④ 해외 범죄기록증명원
- ⑤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
- ⑥ 자기소개서

※ 후보자 제출 서류 작성방법

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

- 인적사항,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
-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

② 신원진술서

-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(유의사항 필독)
-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
-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 사용

③ 여권 사본

- 가급적 칼라 사본 제출

④ 해외 범죄기록증명원

- 미제출시 위촉 배제

※ 발급안내 및 제출 예외사유는 아래 참고

⑤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

- **최근 6개월** 이내 촬영, 컬러사진(여권사진 사이즈, **3.5cm×4.5cm**) 1매

⑥ 자기소개서

- 성명, 성별,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
- 자문위원 활동계획 A4용지 3매 이내 작성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※ 일부 서류가 '누락' 되거나, '자필 서명 또는 날인' 이 빠져있는 경우,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.

※ 후보자 신청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렬하고,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
※ 해외 '범죄기록증명원' 관련 유의사항

- **발급 기관:** 후보자 거주국의 공안기관(예: 미국 - FBI Check)
* 다국가 거주 인사는 최근 1년 이상 '영주국가'에 한하여 발급
- **조회 기간 및 내용:** 거주국 최초 입국일 ~ 발급 신청일, 후보자 범죄사실
- **번역 필요 서류**
 - △비영어권 언어 △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본 필수 제출
* 비공식적 번역본 가능(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영사 확인)

※ 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의 공식적인 사유

- △ 해당국 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로 회신한 경우
- △ 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, 과도한 시간·경비가 소요되는 경우
- △ 대체서류로 범죄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(예: 중국의 경우 '취업허가증'은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만 발급)

⇒ 민주평통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(문의 번호로 연락)
관할지역의 '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사유'를 기재

※ '개인사정'에 따른 미제출은 서류 미비로 후보자 위촉 배제

⑦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

-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의지, 관련 활동 등을 감안하여 심사·선정
- 심사 결과 최종 위촉된 위원에 대해 8월 중 개별 통지 예정

9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별도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
※ 문의 :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(☎ 82-2-2250-2282)